의안번호	제 호
의결 연월일	2014. . . (제 회)

의결사항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 문 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별정우체국은 도서벽지의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61년도에 도입 시행된 이후 50여 년간 국민의 편의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나,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외부의 변화 요구를 반영하는 등 별정우체국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 이후에 새로 지정된 피지정인에게는 지정승계 및 추천국장의 추천을 불허하고 피지정인을 재지정하는 제도로 전환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별정우체국 재지정 근거 신설 및 지정승계 제도 폐지(안 제3조제2항, 부칙 안 제2조)

○ 피지정인의 지정이 해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및 정년 등의 사유로 국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별정우체국의 설치 지역에 새로이 별정우체국을 운영할 사람을 지정하고, 그 지정기간은 피지정인이 국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정년까지의 기간과 2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으로 함

○ 기존 별정우체국을 운영하던 피지정인의 지정승계에 대한

신뢰를 일정부분 보호하기 위하여 피지정인의 지정승계는 현재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에게 1회에 한하여 인정해주도록 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법 개정 시행 이후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승계를 한 피지정인에게는 더 이상의 승계를 불허하도록 함

나. 별정우체국 추천국장의 추천사유 및 자격요건 근거 마련(안 제4조제2호, 제5조제7호, 부칙 안 제3조)

○ 기존에 우정사업본부장 지침으로 정하고 있던 추천국장의 추천사유를 시행령에, 자격요건을 시행규칙에 각각 위임하여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추천사유 및 자격요건을 명시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련한 일반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함

○ 현재 피지정인들이 추천국장제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뢰를 일정부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의 피지정인의 경우에는 요건을 강화하여 인정하도록 하고,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승계된 피지정인은 추천국장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피지정인이 직접 별정우체국을 운영하도록 유도함

다. 지정취소시의 보상으로 청사시설 보상과 수수료 보상을 규정 (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 현행 법률이 정당한 보상이라고 막연히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보완하여 보상의 범위를 청사시설에 대한 보상과 별정우체국 운영에 부수적으로 지급되어 온 취급수수료에 대한 보상으로 구체화 하고, 그 산정방법은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법령으로 정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제목 “제1장 총칙”을 제1조의 앞에 신설한다.

장제목 “제2장 별정우체국의 설치·운영”을 제3조의 앞에 신설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해지 또는 취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운영하려는 사람을 재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지정한 별정우체국의 지정기간은 피지정인이 국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정년까지의 기간과 2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제4항에 따라 피지정인이 지정을 해지하는 경우

2.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국장인 직원이 당연퇴직하는 경우

3.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제3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각각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제4조제2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사유에 해당하여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5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조제2호에 따라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아 국장으로 임용될 사람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일 것

제10조의2 중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을 “직원(국장은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3개월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취소 후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청사시설 보상

2. 수수료 보상

⑤ 제4항에 따른 보상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장제목 “제3장 별정우체국 연금”을 제16조의 앞에 신설한다.

장제목 “제4장 보칙”을 제36조의2의 앞에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승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거나 제3조의3에 따른 지정을 승계한 피지정인은 제3조의3에 따른 승계를 할 수 없다.

제3조(추천국장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거나 제3조의3에 따른 지정을 승계한 피지정인은 제4조제2호에 따른 국장의 추천을 할 수 없다.

제4조(추천국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2호에 따라 추천국장으로 임용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신 설>	제2장 별정우체국의 설치·운영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해지 또는 취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운영하려는 사람을 재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지정한 별정우체국의 지정기간은 피지정인이 국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정년까지의 기간과 2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제4항에 따라 피지정인이 지정을 해지하는 경우 2.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국장인 직원이 당연퇴직하는 경우 3.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 ---------- ---------- ---------- ---------- ----------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지정을 해지하려면 해지하기 3개월 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 ---------- ---------- ---------- ---------- ----------.
제4조(국장의 임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장으로 임용한다. 1. 피지정인 2.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국장의 임용) ---------- ---------- ---------- ---------- ---------- -------. 1.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사유에 해당하여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5조(국장의 자격요건)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 6. (생 략)	제5조(국장의 자격요건) ---------- ---------- ---------- ---------- ---------- ---------.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4조제2호에 따라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아 국장으로 임용될 사람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

	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일 것
제10조의2(명예퇴직 등) ①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명예퇴직 등) ① 직원(국장은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한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지정의 취소) ① ~ ③ (생략)	제15조(지정의 취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3개월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취소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3개월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취소 후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청사시설 보상 2. 수수료 보상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보상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장 별정우체국 연금
<신 설>	제4장 보칙

〈 의안 소관 부서명 〉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	
연 락 처	(02) 2195 - 1161